

#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

시 행	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-8191	주무관	사전협상팀장	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	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	도시재생본부장	결 재												
결재일자	2015. 10. 2.	최나영	代최나영	김용학	권해윤	10/02 진희선								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협 조</td> <td style="width: 60%; border: none;">개발정책팀장</td> <td style="width: 25%; border: none; text-align: right;">이상면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철도계획팀장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 text-align: right;">노병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행정팀장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 text-align: right;">김형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/tr> </table>					협 조	개발정책팀장	이상면		철도계획팀장	노병춘		행정팀장	김형래				
협 조	개발정책팀장						이상면												
	철도계획팀장						노병춘												
	행정팀장						김형래												
접수번호																			
접수일자																			
수 신 자	수신자참조																		

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(요구번호 1559번, 김희국 의원, 국토교통위원회)

붙임 :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. 끝.

□ 요구번호 : 1559번

## 2. 강남구와의 한전부지 갈등 관련

- 1)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기반시설인 "(잠실종합)운동장"을 포함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
 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'운동장'이 없고,
  - 201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-1-7의 (2) 관련법규 3)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에 운동장이 명시되었다는 지적
- 2)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키 위해 불법 잠탈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
  - 2015년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 전 강남구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는 것
- 3) 5.21 지구단위 계획을 개정한 이유에 대한 서울시 입장
- 4) 개정에 따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만 사용토록 한 조항을, 종합운동장에도 확대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 입장
- 5) 서울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2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
- 6) 본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개정결정시 재원조달 방안, 경관계획 작성을 누락(국토계획법 제25조 위반 여부)했고, 환경영향평가 누락(환경영향평가법 제9조) 및 환경청 사전협의(국토계획법 제30조)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
- 7) 강남구에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음에도 서울시가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용역을 발주한 이유
- 8) 강남구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2015년 한해 6번 신청 및 강남구 비대위에서 3번을 신청했음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서울시장과의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
- 9) 현대차와의 협상을 위한 "협상조정협의회"에 강남구를 배제한 이유, 아울러 "협상정책회의 및 실무TF"에만 강남구를 포함시킨 이유

1) **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**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 
기반시설인 “(잠실종합)운동장”을 포함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

- ▶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‘운동장’이 없고,
- ▶ 201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-1-7의 (2) 관련법규 3)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에 운동장이 명시되었다는 지적

- 잠실운동장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한 결정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의거한 적법한 사항임.
  - ‘운동장’ 시설의 재배치, 기능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, 도시지역의 체계적,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강남구가 근거 조항으로 주장하는 국토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는 ‘운동장 시설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다’는 것이지, ‘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운동장 시설을 포함하지 말라’는 뜻은 아님.

2) **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키 위해 불법 잠탈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**

- ▶ 2015년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 전 강남구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는 것
- ‘코엑스~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’을 수립(’13.5~’14.5)하면서 강남구와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하였고, 계획 발표시(’14.4)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예정 및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의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- 국토계획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열람공고시(’15.4.16~30) 강남구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

- 또한,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강남구민들의 반대서명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고하였고,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발언 기회도 보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.

- 강남구청장('15.4.8 발언), 강남부구청장('15.5.13 발언)

### 3) 5.2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이유에 대한 서울시 입장

- 코엑스~잠실운동장일대의 연계개발 필요성은 이미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던 민선6기인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검토되었고,
- 이후, 서울 시민과 함께 수립하였던 「2030 서울플랜」에서도, 강남지역을 3대 도심중 하나로 설정, '국제 업무 및 MICE 산업의 중심거점'으로 육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였으며,
- “코엑스~한전~탄천·잠실종합운동장 일대”를 국제업무, 전시·컨벤션, 스포츠,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가지 핵심기능을 융합한 「국제교류복합지구」 조성사업 계획을 2014. 4월에 발표하였고, 동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한 것임.

### 4)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고시함에 따라,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만 사용토록 한 조항을, 종합운동장에도 확대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 입장

- 공공기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해당 자치구의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사용 가능함.
-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연계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지구 내 각 전략부지별 개발지침(가이드라인)을 마련했음.

- 전략부지 중 하나인 옛 한전부지는 도시계획 종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여 국제업무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,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노후화된 잠실운동장 일대의 복합개발과 영동대로 통합개발 등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확보에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음.
- 이러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목적 달성과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부지 공공기여 일부를 잠실운동장 지역까지 쓰기로 한 것임.

5) 서울시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2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

- '09년 사전협상제도 시행당시 공공기여의 제공범위는 서울시 전역이었고, '12년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 전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, 자치구 범위 내에서 제공토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됨.
- 동일 생활권인 특별시·광역시의 경우, 기반시설의 연계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기반시설 제공범위의 市전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, '15년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재개정을 건의하였음
  - 특별시·광역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기반시설이 물리적·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자치구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여건상 불합리하며,
  - 대규모 부지개발로 인한 광역적 교통수요 유발 등을 고려했을 때, 자치구 범위를 넘어서 도시 전체에 개발 영향이 미치므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함.

6)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시 재원조달 방안, 경관계획 작성을 누락(국토계획법 제25조 위반 여부)했고, 환경영향평가 누락(환경영향평가법 제9조) 및 환경청 사전협의(국토계획법 제30조)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'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'과 '지구단위계획 결정'은 구분되어 있어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

- '15.5.21 고시 내용은 해당 구역 내 구체적 개발계획의 수립·결정이 아니라,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만을 지정한 사항임
  - 당해 구역 결정은 개발행위 수립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계획과 민간개발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담은 개발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음
- 국토계획법 제25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계획도서와 함께 이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, 관련 계획이 있을 시 보조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,
  -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획설명서에 재원조달방안 포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,
  -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강남구가 주장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대상(「경관법」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 참조)에 속하지 않음.
- 향후,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,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관계획,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.

**7) 강남구에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음에도 서울시가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용역을 발주한 이유**

-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 용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의거 시·도시사의 권한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통합개발의 기술적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안마련 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임
  -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주변지역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답보 상태였으며, '15.3월 삼성~동탄 광역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방향 협의
- ※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관련 T/F 회의 운영(4회, '15.7월~8월)
  - 서울시, 국토부, 철도시설공단, 강남구 등 관계기관 참여
- 강남구에서 시행중인 용역은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제시용으로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음

- 그 동안 시가 국토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강남구도 참여시키는 등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
- 강남구와 회의시('15.6.19)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관련법령에 의거 권한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강남구가 별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렸지만 용역을 발주하였음

**8) 강남구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2015년 한해 6번 신청 및 강남구 비대위에서 3번을 신청했음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서울시장과의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**

- 강남구 및 비대위는 시 정책 및 입장에 대해 악의적인 비판 보도자료 배포하였고, 정상적 업무 수행중인 직원을 직권남용, 직무유기,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였으며, 시청사를 기습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비협력적 태도를 보임
  - 면담의 전제조건인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면담 보류 결정
- 그러나, 강남구 및 비대위가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를 갖고 면담을 요청한다면 언제라도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

**9) 현대차와의 협상을 위한 "협상조정협의회"에 강남구를 배제한 이유, 아울러 "협상정책회의 및 실무TF"에만 강남구를 포함시킨 이유**

-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(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)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임.
- 우리시는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 '협상조정협의회, 정책회의, 실무TF' 등 3개의 협상조직을 운영하고 있음.
  - 협상조정협의회는 법률적 당사자인 서울시(한전부지 개발 허가권자), 현대차그룹(한전부지 소유자),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고,
  -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'협상조정협의회'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,

- 정책회의와 실무TF 2개의 협상조직에 참여하여 한전부지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율할 수 있음. 끝.

작성 자	기관명 (부서명)	직위	성명
	서울특별시 (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)	담당사무관	김창호
	☎2133-8263	주무관	최나영
	서울특별시 (공공개발센터)	담당사무관	이상면
	☎2133-8356	주무관	주명수
	서울특별시 (교통정책과)	담당사무관	노병춘
	☎2133-2238	주무관	이상석
	서울특별시 (자치행정과)	담당사무관	김형래
	☎2133-5806	주무관	안현주
	작성일 : 2015. 9.		